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33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김원이・위성곤・김한규

양문석 • 한준호 • 신정훈

박지혜 • 박희승 • 김선민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시·도의 사정에 따라 1명의 순회 보건교사가 적게는 1~3개교, 많게는 6~7개교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의 경우 순회 보건교사로 운영할 경우 학교 간 거리가 상당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보건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최근 감염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확산됨에 따라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어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 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생 건강관리 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단서).

법률 제 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학교 외에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 2.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
사 및 보건교사) ① (생 략)	사 및 보건교사) ① (현행과 같
	<u>⋄</u>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②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	
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u>대통령령으로</u> 정하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에 해당하는 지역의 학교 외에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u>대통령령으로</u>
<u><신 설></u>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농어촌
<u><신 설></u>	2.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산촌
<u><신 설></u>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